

물품제조구매계약서

KAC공항서비스(주)(이하 '갑'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행복큐산업(이하 '을'이라 한다)은 별첨 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아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1. 물품명: 동계 근무복(점퍼)

2. 세부품명 및 수량:

순 번	품 명	수 량	비 고
1	외근용 점퍼(해비다운)	1,150벌	일부 직원 롱패딩 점퍼 지급
2	내근용 점퍼(경량다운)	1,150벌	
	합 계	2,300벌	

* 외근용·내근용 각 1벌: 1인 2벌

3. 계약금액: 금 258,945,500원정 (V.A.T. 및 배송비 포함)

4. 납품장소: '갑'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

5. 납품기한: 2020.12.18

6. 물품보증: 1년(하자보증보험증권 별도 제출)

7. 손해배상:

○ '을'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'갑'의 손실에 대하여 '갑'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, '을'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.

8. 기타사항:

○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○ 계약 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.

2020년 11월 11일

수요자(갑)

KAC공항서비스(주)

(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0)

사장 이상연



계약자(을)

주식회사 행복큐산업

(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227-17)

사장 박지혜, 배명순



[별첨]

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

제 1조(총칙) KAC공항서비스(주)(이하 '갑'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(이하 '을'이라 한다)은 물품제조구매계약서(이하 '계약서'라 한다)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.

제 2조(납품)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(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)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,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갑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, 파손 등은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.
③ 갑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지시한 경우 분할 납품을 할 수 있다.

제 3조(규격)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, 규격번호 및 갑이 제시하고 을과 협의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, ~~구매특수~~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.
② 계약상 규격이 ~~명시되어 있지~~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.

제 4조(하자보증) ①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, 을은 하자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5/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 제출한다.
② 갑은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.
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⑤ 을이 갑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이 통지한 후,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는 을은 당해 물품대를 갑에 반납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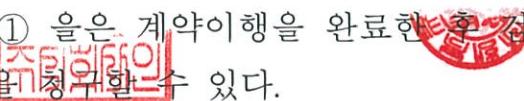
제 5조(수량조절)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할 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.

제 6조(검사) ①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갑에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갑은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검사에서 불 합격되거나 부적당하다고 지적되었을 시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대품과 교환하 여야 한다.

제 7조(권리의무의 양도)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 8조(특허 및 상표) 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 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 9조(대가의 지급) ①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호 간에 합의에 따라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.

③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조(지체상금)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체상금율(7.5/100)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‘지체상금’이라 한다)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을은 다음 각호의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 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
 2. 갑의 요청으로 인해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
 3.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
- ③ 갑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제 11조(계약의 해제)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서상의 납품기한(또는 연장된 납품기한)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
 2.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
 3.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기납품한 물품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.
- ④ 을은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조(어구의 해석) 이 조건 및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.

제 13조(국가계약규정 등의 준용)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계약지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, 회계예규, 해석 등을 준용한다.